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205

2025. 1. 16.
총 무 위 원 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6. 광양시장

나. 회부 일자 : 2024. 11. 07.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025. 1. 16.) 상정, “수정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성차별적 논란 불식 및 지원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명으로 개정하고 광양시 출산장려금의 각종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제명 및 용어 등 변경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안 제4조)

❍ 신청기한 변경 및 분할지급금 신설 (안 제6조)

❍ 각종 요건 완화에 따른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개정

3. 검토 의견

가. 주요 내용 검토

○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일부개정 및 신설)

- 제명 개정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용어의 정의) 1의2 신설

▸ 분할지급금 신설 (첫 번째 생일부터 네 번째 생일까지 신청하는 출생장려금)

- 일부 용어 개정

▸ 출산장려금, 출산일, 출산장려, 출산 장려 및 양육 → 출생장려금, 출생장려, 출생일, 출산가정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등 완화(일부개정 및 신설)

- 제4조제1항 개정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 부모 →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또는 분할금 신청일 / 부 또는 모 / 거주기간 미 충족시 6개월 경과 후 지원

- 제4조제2항 개정

▸ 출생장려금이 기지급된 영아 입양시 제외 → 출생시 지원금 제외 후 지급

- 제4조제3항 신설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예외 지원

- 제4조제5항 개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 부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 부 또는 모

- 제5조제1항 개정

▸ 출산장려금 → 출생장려금

- 제5조제3항 개정

▸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의 증빙서류(직업상 사유) 구비 삭제

- 제5조제4항 신설

▸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생순위 산정

❍ **신청기한 변경 및 분할지급금 신설(일부개정 및 신설)**

- 제6조제2항 개정

▸ 신청기한 90일 이내 → 신청기한 5년 이내

-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 분할지급금 신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 생략 가능

▸ 사망, 이혼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원 중단 및 환수내용 추가(일부개정)**

-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 지원대상 자녀의 전출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내용 추가

❍ **별표 1,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변경(일부개정)**

- 별표 1 개정

▸ 출산장려금 → 출생장려금

-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 용어 개정, 분할지급금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동의 내용추가 및 서식 변경

나. 검토 결과

❍ **이 개정 조례안은** 성차별적 논란 불식 및 지원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명으로 개정**하고 광양시 **출산장려금의 각종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 및 조례안의 내용과 조문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수정의결(출석위원 6명)

※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수정안 참고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1.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205-1

제안연월일 : 2025. 1. 16.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 이유

○ 출생장려금 명칭 변경, 지원대상 확대, 신청기한 등을 조정함.

2. 수정 내용

구 분		당초 개정(안)	변 경 (안)
제 명 개 정		□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용 어 개 정		□ **출생**장려금, **출생** 장려	■ **출생축하금, 출생** 장려
신청기한 완화		□ **5년 이내**(지방재정법 제82조 적용)	■ **1년 이내**
지원 대상	출 산 장 려 금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 **부 또는 모** 거주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 **부모** 거주
		■ 거주기간 미충족 시 **6개월 경과 후 지원**	좌 동
	다 자 녀 출 산 맘 행복쿠폰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거주	■ 출생일 기준 **부모** 거주
지원 절차	출 산 장 려 금	■ 출산장려금 **자동지급제** 시행	■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 시행
예외 지원	출 산 장 려 금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 □ **시장이 인정하는 자[추가]**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생장려금”이란”을 ““출생축하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출생장려금 등”이란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 등”이란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출산가정 지원”을 “출생가정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부 또는 모”를 “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단서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제5조제1항 본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생장려금 등 지원”을 “출생축하금 등 지원”으로, “출생장려금 등을”을 “출생축하금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출생장려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출생장려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생장려금 등 지급”을 “출생축하금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출생장려금 신청현황”을 “출생축하금 신청현황”으로, “출생장려금 등”을 “출생축하금 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광양시 자체 서비스란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5년”을 “1년”으로 하고,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출생일 : 2024.1.1. 전[ ] <출생일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출생일 : 2024.1.1. 이후[ ] <출생일 전후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부모>”으로, “출생 6개월 전부터”를 “거주 시작일부터”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신청기한: 출생일, 첫 번째 생일 기준 5년 이내)”를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신청기한: 출생일, 첫 번째 생일 기준 1년 이내)”로 하고,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산후조리비용(※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5년 이내)”를 “산후조리비용(※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로 한다.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

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란 제13호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같은 란 제14호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5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15호 중 “출산가정”을 “출생가정”으로, “부 또는 모,”를 “부모와”로 한다.

같은 서식의 같은 란 중 “광양시 출생장려금의 출생순위는”을 “광양시 출생축하금의 출생순위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를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의”로 한다.

부칙 제3조 중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를 “제6조제4항,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를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 및 제6항, 제7조제1항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 출산가정--- ---------- ---------- ---------- ---------- -----.	제1조(목적) ---------- ---------- ---------- 출생가정-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 ---------- -.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출생장려금”이란 -------- ---------- ---------- ---------- ---------- -----.	1. “출생축하금”이란 -------- ---------- ---------- ---------- ---------- ----.
1의2. “분할지급금”이란 첫 번째 생일부터 네 번째 생일까지 지급하는 출생장려금을 말한다.	1의2. ---------- ---------- --- 출생축하금----.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	3. (개정안과 같음)

---------- 가정에 ---------- ----------.	
4.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출생장려 시책사업”---------- ---------- ---------- ---------- ---------- ----------.	5. (개정안과 같음)
6. “출생장려금 등”이란 출생장려금---------- ----------.	6. “출생축하금 등”이란 출생축하금---------- ----------.
제3조(시장의 책무) ---------- ---------- ---------- ---------- 출산 가정 지원 ---------- ----------.	제3조(시장의 책무) ---------- ---------- ---------- ---------- 출생가정 지원 ---------- ----------.
제4조(지원대상) ① 출생장려금---------- ---------- 6개월 ---------- 현재 또는 분할지급금 신청일---------- ----------부 또는 모----	제4조(지원대상) ① 출생축하금---------- ---------- ---------- ---------- ----------부모--

--. ---------- 6개월 미만----- 6개월이 -------- ---------- --- 지급한다.	----. ---------- ---------- ---------- ---------- ----------.
②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부모)가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보호자(부모 이외의 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신 설>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신 설>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2.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생 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4. ---------- -. ---------- 출생 축하금---------- ----------.

3.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다만,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개정안 제3호와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출생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⑤ ---------- 부 또는 모---------- 출산가정----------.	④ ---------- 부 모---------- 출생가정----------.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장려금----------.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축하금----------.

---------- -.	---------- ---.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지급한다.	③ ---------- ----------. -- ---------- ---------- ---------- ----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④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생순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1. 재혼: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2.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	④ (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 ----------	제6조(지원절차) ① ---------- ----------

---------- 출생장려금 등 지원 ----------

-- 출생장려금 등을 --------

---.

② ----- 출생장려금 -------

------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주소지 ----------. 출생장려금 ----------

---.

1. 출생장려금 ----------

---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2. ----------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3. ----------

5년 --

③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생장려금은 분할 지급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에 따

---------- 출생축하금 등 지원 ----------

---- 출생축하금 등을 -----

---.

② ----- 출생축하금 -------

---.

출생축하금 ----------

--.

1. 출생축하금 ----------

---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2.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3. ----------

-- 1년 --

③ ----------

---------- 출생축하금----------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
④ 시장은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시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 제5항------ ---------- ---------- ----------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출생장려금 ------- ---------- 신청서 ----- ---------- ---------- ---------- ----------.	⑦ ----- 출생축하금 ------- ---------- ---------- ---------- ---------- ----------.
⑧ 출생장려금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⑧ 출생축하금---------- ---------- ---------- ---------- ----------

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 다음 ---------- ---------- ---------- -------- 출생장려금 등 지급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 ---------- ---------- --------- 출생축하금 등 지급--------.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녀가 제4조제1항-------	2. (개정안과 같음)
② ---------- ---------- 출생장려금 --- ---------- ---------- -.	② ---------- ---------- 출생축하금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 ---------- ---------- 출생장려금 신청현황-------- ---------- ---------- ---------- ---------- 출생장려금 등----------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 ---------- ---------- -- 출생축하금 신청현황----- ---------- ---------- ---------- ---------- 출생축하금 등----------

----------.	----------.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 ------ 출생장려 ---------- ---------- ----- 출생장려---------- ---------- ---------.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출생장려-------- ----------	2. (개정안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 출생장려 ---------- ------- 임신·출생장려 ----------	4. (개정안과 같음)
② ------ 임신·출생·양육-- ----------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출생장려 ---------- ---------- ---------- ----------.	③ (개정안과 같음)
[별표 1]	[별표 1]

광양시 출생장려금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출 생 순위별	지급액	지 급 방 법
첫째아	500 만원	· 출생 시 100만원 · 매년 생일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둘째아	1,000 만원	· 출생 시 200만원 · 매년 생일 20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1,500 만원	· 출생 시 300만원 · 매년 생일 3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2,000 만원	· 출생 시 400만원 · 매년 생일 400만원씩 4년간 지급

[별지 제1호서식] - 별첨(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 별첨(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절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생일이 도래하는 2016년 7월 27일부터 2024년까지의 출생장려금 지원대상자인 경우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출 생 순위별	지급액	지 급 방 법
첫째아	500 만원	· 출생 시 100만원 · 매년 생일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둘째아	1,000 만원	· 출생 시 200만원 · 매년 생일 20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1,500 만원	· 출생 시 300만원 · 매년 생일 3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2,000 만원	· 출생 시 400만원 · 매년 생일 400만원씩 4년간 지급

[별지 제1호서식] - 별첨(수정안)

[별지 제2호서식] - 별첨(수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절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생일이 도래하는 2016년 7월 27일부터 2024년까지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인 경우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 및 제6항,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첨(개정안)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주민등록주소지를 작성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 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광양시 자체 서비스		
	출생장려금 (※신청기한: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 기준 5년 이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순위 : 첫째 [ ] 둘째 [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이상 [ ] ※ 출생 6개월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 사이 타 지역 전출입 이력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최초 신청 이후 연락처, 보호자 및 계좌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알려 지급 오류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 (※신청기한: 출생일, 첫번째 생일 기준 5년 이내)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순위: 둘째 [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이상 [ ] - 신청구분: 출생 [ ] 돌 [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순위: [ ]째아 ※ 지원기준은 전남도 지침에 따름
	산후조리비용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구분: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 기 타[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4.1.1. 이후 출생자)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출생순위 : 첫째 [ ] 둘째아 이상 [ ]
	부모급여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저소득층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광양시장 귀 하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처리자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 거주기간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5. 광양시 출생장려금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의 사망·이혼 및 보호자의 실제 양육을 증명하는 서류 6.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신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2. 광양시 출생장려금,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지원기간 중 신청인, 배우자,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 전출·입 여부 확인)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 의 사 항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및 개 인 정 보 활 용·제 공 동 의 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광양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광양시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지원대상은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지원기간 중 매년 출생아(입양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대상 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4. **출생장려금 신청 시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바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거주요건(6개월) 충족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5. **지원대상은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절차),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따라 지급기간(5년간 분할지급) 중 부 또는 모, 출생아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타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광양시 출생장려금의 출생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순위(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로만 인정됩니다.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 별첨(수정안)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주민등록주소지를 작성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 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광양시 자체 서비스		
	출생축하금 (※신청기한: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일:2024.1.1. 전[ ] <출생일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출생일:2024.1.1. 이후[ ]<출생일 전후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부모> - 출생순위: 첫째 [ ] 둘째 [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이상 [ ] ※ **거주 시작일부터 지원금 신청일 사이 타 지역 전출입 이력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최초 신청 이후 연락처, 보호자 및 계좌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알려 지급 오류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 (※신청기한: 출생일, 첫번째 생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출생순위: 둘째 [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이상 [ ] - 신청구분: 출생 [ ] 돌 [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순위: [ ]째아 ※ 지원기준은 전남도 지침에 따름
	산후조리비용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구분: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 기 타[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4.1.1. 이후 출생자)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출생순위 : 첫째 [ ] 둘째아 이상 [ ]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부모급여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저소득층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광양시장 귀 하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처리자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 거주기간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 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5. 광양시 출생축하금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의 사망·이혼 및 보호자의 실제 양육을 증명하는 서류 6.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신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2. 광양시 출생축하금,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지원기간 중 신청인, 배우자,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 전출·입 여부 확인)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 의 사 항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및 개 인 정 보 활 용·제 공 동 의 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광양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광양시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지원대상은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지원기간 중 매년 출생아(입양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대상 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4. **출생축하금 신청 시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바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거주요건(6개월)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5. **지원대상은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제5조(지원기준 등),제6조(지원절차),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따라 지급기간(5년간 분할지급) 중 부모와 출생아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타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광양시 출생축하금의 출생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순위(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로만 인정됩니다.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 별첨(개정안)

출생장려금 신청현황

연번	신청일	주소	신생아					보호자					신청기일	지급액 (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출생 순위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출생 신고일	지급차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전입일	거주기간						

[별지 제2호서식] - 별첨(수정안)

출생축하금 신청현황

연번	신청일	주소	신생아					보호자					신청기일	지급액 (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출생 순위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출생 신고일	지급차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전입일	거주기간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출산가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산장려금”이란”을 ““출생장려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엄마를 위해”를 “가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출산장려 시책사업””을 ““출생장려 시책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출산장려금 등”이란 출산장려금”을 ““출생장려금 등”이란 출생장려금”으로 한다.

1의2. “분할지급금”이란 첫 번째 생일부터 네 번째 생일까지 지급하는 출생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 중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출산가정 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장려금”으로, “1년”을 “6개월”로, “현재”를 “현재 또는 분할지급금 신청일”로,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년 미만”을 “6개월 미만”으로, “1년이”를 “6개월이”로,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보호자(부모 이외의

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2.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생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3.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다만,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출생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생순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1. 재혼: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2.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

제6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출생장려금 등 지원”으로, “출산장려금 등을”을 “출생장려금 등을”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장려금”으로, “주소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주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장려금”으로,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90일”을 “5년”으로 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장려금”으로,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를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생장려금은 분할 지급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시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출생장려금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가 다음”을 “다음”으로, “지급”을 “출생장려금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을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제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장려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 신청현황”을 “출생장려금 신청현황”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출생장려금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장려”를 각각 “출생장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산장려”를 “출생장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출산장려”를 “출생장려”로, “임신·출산 장려”를 “임신·출생장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신·출산·양육”을 “임신·출생·양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장려”를 “출생장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절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생일이 도래하는 2016년 7월 27일부터 2024년까지의 출생장려금 지원 대상자인 경우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광양시 출생장려금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출생 순위별	지급액	지 급 방 법
첫째아	500만원	• 출생 시 100만원 • 매년 생일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둘째아	1,000만원	• 출생 시 200만원 • 매년 생일 20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1,500만원	• 출생 시 300만원 • 매년 생일 3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	• 출생 시 400만원 • 매년 생일 400만원씩 4년간 지급

※ 쌍태아 이상의 경우 태아별로 지원

[별지 제1호서식]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주민등록주소지를 작성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 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광양시 자체 서비스		
	출생장려금 (※신청기한: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 기준 5년 이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순위 : 첫째 [ ] 둘째 [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이상 [ ] ※ 출생 6개월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 사이 타 지역 전출입 이력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최초 신청 이후 연락처, 보호자 및 계좌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알려 지급 오류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 (※신청기한:출생일,첫번째 생일 기준 5년 이내)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순위: 둘째 [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이상 [ ] - 신청구분: 출생 [ ] 돌 [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순위: [ ]째아 ※ 지원기준은 전남도 지침에 따름
	산후조리비용 (※신청기한: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구분: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 기 타[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4.1.1. 이후 출생자)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출생순위 : 첫째 [ ] 둘째아 이상 [ ]
	부모급여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저소득층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광양시장 귀 하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처리자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 거주기간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5. 광양시 출생장려금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의 사망·이혼 및 보호자의 실제 양육을 증명하는 서류 6.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신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2. 광양시 출생장려금,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지원기간 중 신청인, 배우자,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 전출·입 여부 확인)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 의 사 항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및 개 인 정 보 활 용·제 공 동 의 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광양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광양시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지원대상은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지원기간 중 매년 출생아(입양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대상 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4. **출생장려금 신청 시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바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거주요건(6개월) 충족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5. **지원대상은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절차),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따라 지급기간(5년간 분할지급) 중 부 또는 모, 출생아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타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광양시 출생장려금의 출생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순위(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로만 인정됩니다.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출생장려금 신청현황

연번	신청일	주소	신생아					보호자					신청기일	지급액(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출생순위	성명	생년월일(성별)	출생신고일	지급차수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전입일	거주기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출산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출산가정-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출산장려금”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1. “출생장려금”이란 --------.
<신 설>	1의2. “분할지급금”이란 첫 번째 생일부터 네 번째 생일까지 지급하는 출생장려금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이	3. ----------

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엄마를 위해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가정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출산장려 시책사업”이란 시가 아이디어 공모나 건의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내용 중 타당하다고 인정한 시책과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출생장려 시책사업”---------- ----------.
6. “출산장려금 등”이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등을 말한다.	6. “출생장려금 등”이란 출생장려금---------- ----------.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 ---------- 출산가정 지원 ---------- ----------.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거주한 기간이	제4조(지원대상) ① 출생장려금- ---------- ---------- 6개월 ---------- 현재 또는 분할 지급금 신청일---------- ---------- 부 또는 모 -------. ----------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6개월 미만----- 6개월이 ----------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② ----------.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보호자(부모 이외의 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2.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생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3.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다만,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출생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⑤ ---------- 부 또는 모----------.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장려금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첫 번째 생일 때 지원하는 금액은 출생일 이후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	③ ----------. ---- 지급한다.

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④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생순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1. 재혼: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2.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 ---------- ---------- 출생장려금 등 지원 ---------- ---------- ---- 출생장려금 등을 ----- ----------.
② 제5조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출생장려금 ------- ---------- ---------- --------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주소지 ----------.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생장려금 ----------.
1. 출산장려금 : 출생일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1. 출생장려금 ---------- ---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5년 ---
2. 산후조리비용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2. ----------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 출생일과 첫 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3. ---------- -- 5년 -----
<신 설>	③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별표 1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생장려금은 분할 지급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시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제5항------ ---------- ---------- ---------- --------.
⑤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 출생장려금 ------- ---------- 신청서 ----- ---------- ---------- ---------- ----------.
<신 설>	⑧ 출생장려금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 다음 ---------- ---------- ---------- ---------- 출생장려금 등의 지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제4조제1항-------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 출생장려금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시장 및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현황, 별지 제3호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서 접수현황 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접수현황 대장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 및 지원 현황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 -- 출생장려금 신청현황---------- ---------- ---------- ---------- 출생장려금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신 및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 출생장려 ---------- ---------- 출생장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모자보건,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 출생장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조제5호에 의해 채택된 출산장려 시책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임신·출산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출생장려 ---------- -------- 임신·출생장려 ----------
② 시장은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검진을 위해 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임신·출생·양육---------- ----------.
③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출생장려 ---------- ---------- ----------.

(현행+개정안+수정안)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출생가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출생축하금"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1의2. "분할지급금"이란 첫 번째 생일부터 네 번째 생일까지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 또는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엄마를 위해~~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어느 한 사람)를 말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출산장려 시책사업~~”출생장려 시책사업이란 시가 아이디어 공모나 건의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내용 중 타당하다고 인정한 시책과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출산장려금 등~~”이란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 등”이란 출생축하금과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출생가정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현재 또는 분할지급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6개월 미만인 경우는 ~~1년이~~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

~~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출생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장려금~~ 출생축하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5.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후조리비용은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급한다.

④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20%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첫 번째 생일 때 지원하는 금액은 출생일 이후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시: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2. 첫 번째 생일 :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④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④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생순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1. 재혼: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2.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 지원~~출생축하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장려금 등을~~출생축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 등의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 : 출생일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2. 산후조리비용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 출생일과 첫 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90일~~1년 이내

③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은 분할 지급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시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⑤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2. 출생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3.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4. 신청인의 적격 여부

~~④~~⑥ 읍·면·동장은 ~~제3항~~제5항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⑦ 시장은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출생축하금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가 다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출생축하금 등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제4조제1항~~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시장 및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현황~~출생축하금 신청현황, 별지 제3호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서 접수현황 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접수현황 대장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출생축하금 등의 신청 및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대장은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전산파일로 관리할 경우에는 문서보안과 자료 삭제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출생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신 및 ~~출산장려~~출생장려 시책사

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

2. 모자보건, ~~출산장려~~출생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4. 제2조제5호에 의해 채택된 ~~출산장려~~출생장려 시책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임신·출산 장려~~임신·출생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임신·출산·양육~~임신·출생·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검진을 위해 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산장려~~출생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절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생일이 도래하는 201

6년 7월 27일부터 2024년까지의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인 경우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6조제7항 및 제6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4조,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 및 제6항,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출생 순위별	지급액	지 급 방 법
첫째아	500만원	• 출생 시 100만원 • 매년 생일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둘째아	1,000만원	• 출생 시 200만원 • 매년 생일 200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아	1,500만원	• 출생 시 300만원 • 매년 생일 30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	• 출생 시 400만원 • 매년 생일 400만원씩 4년간 지급

※ 쌍태아 이상의 경우 태아별로 지원

(별표 2)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이용여부	지 원 대 상 자	1 일 지원액	최 대 지원액
1. 관 내 민 간 산 후 조 리 원 이 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10만 원	140만 원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산모	10만 원	126만 원
	마. 그 외의 경우	10만 원	100만 원
2. 관 내 공 공 산 후 조 리 원 이 용	가.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자.「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차. 귀농어・귀촌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최대 14일)	
	카. 그 외의 경우	10만 원	100만 원
3. 기 타*	가.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나.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다. 관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비감면대상자	40만 원	

* 제3호 기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관내 민간산후조리원과 관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중복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제1호 가~라목과 제2호 가~차목은 1일 지원액 기준으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지원금액(최대 14일) 이내에서 지원하며, 제1호 마목과 제2호 카목 대상자는 1일 지원액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대상자가 관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는「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및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 감면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주민등록주소지를 작성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 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광양시 자체 서비스		
	출생축하금 (※신청기한: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일:2024.1.1. 전[ ] <**출생일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출생일:2024.1.1. 이후[ ]<**출생일 전후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부모**> - 출생순위: 첫째 [ ] 둘째 [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이상 [ ] ※ **거주 시작일부터 지원금 신청일 사이 타 지역 전출입 이력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최초 신청 이후 연락처, 보호자 및 계좌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알려 지급 오류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다자녀(2명 이상) 출산맘 행복쿠폰 (※신청기한:출생일,첫번째 생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일부터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출생순위: 둘째 [ ] 셋째 [ ] 넷째 [ ] 다섯째 이상 [ ] - 신청구분: 출생 [ ] 돌 [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순위: [ ]째아 ※ **지원기준은 전남도 지침에 따름**
	산후조리비용 (※신청기한: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구분: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 기 타[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4.1.1. 이후 출생자)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출생순위 : 첫째 [ ] 둘째아 이상 [ ]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부모급여 (0~24개월 미만)		[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저소득층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광양시장 귀 하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처리자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 거주기간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생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 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5. 광양시 출생축하금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의 사망·이혼 및 보호자의 실제 양육을 증명하는 서류 6.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신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2. 광양시 출생축하금,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지원기간 중 신청인, 배우자,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 전출·입 여부 확인)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 의 사 항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및 개 인 정 보 활 용·제 공 동 의 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광양시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광양시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지원대상은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지원기간 중 매년 출생아(입양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대상 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4. **출생축하금 신청 시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바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거주요건(6개월)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생아의 부 또는 모(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5. **지원대상은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제5조(지원기준 등),제6조(지원절차),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따라 지급기간(5년간 분할지급) 중 부모와 출생아가 계속해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타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광양시 출생축하금의 출생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순위(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로만 인정됩니다.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출생축하금 신청현황

연번	신청일	주소	신생아					보호자					신청기일	지급액(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출생순위	성명	생년월일(성별)	출생신고일	지급차수	성명	생년월일(성별)	연락처	전입일	거주기간						

(별지 제3호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현황 대장

연번	신 청 인					신 생 아		전입연월일 (거주기간)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지급 구분 (기초,장애정도가 심한, 심하지않은 산모,차상위,일반)	입 금 내 역					
	주 소	성명	생년 월일	신생아 와 관계	전화 번호	성 명	생년 월일		명칭	기간		신청일	금액	계좌 번호	은행명	예금주	비고

(별지 제4호서식)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접수현황 대장

연번	신청일	신 청 인					신 생 아			전입일	서명	카드수량(매)			비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신생아와 관계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수령	지급	잔량	